

## 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

대구시설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고 함) 『회계규정』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공단 『규정관리규정』 제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합니다.

2018년 8월 13일

대구시설공단 이사장

### 1. 규정명칭 : 회계규정

### 2. 개정이유

- 현행 내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코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시설비 예산요구서 작성 시 공사시행부서와 사전협의제도 삭제  
(안 제49조 제3항)

### 4. 의견제출

-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신 후 담당자 앞으로 서면(문서, 팩스, 컴퓨터 통신 등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---- 아 래 -----

의견제출자 개인성명 또는 단체이름	
주 소	
연 락 처	
의견내용	
의견제출의 근거	

※ 의견내용 및 의견제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.

○ 의견제출 시한 (도착기준) : 2018년 9월 3일(월) 18:00까지

## 5. 접수부서, 담당자, 연락처 등

○ 접수부서 및 담당자 : 경영지원처 기획예산팀 도민정

○ 연 락 처 : (전화) 053-603-1113 (팩스) 053-603-1040

(이메일) dgs01@dgsisul.or.kr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설공단 경영지원처 회계팀 담당자(☎ 053-603-1132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대구시설공단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 안 제출) ①·②(생략) ③ 예산과목 중 시설비의 경우 각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기 전 에 공사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	<삭제>